

 보건복지부		보 도 자 료 11월 13일(월) 조간(11.12.12시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7. 11. 10. / (총 14 매)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과 장	강 인 철	전 화	044-202-3310
담 당 자	정 용 수		044-202-330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하지 마세요

- 읍·면·동사무소, 체육·판매시설 등 3,708개소 대상 민관합동 점검 한 달간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전국 198개소)

-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해 2회씩(상·하반기) 실시됐고, 올해 하반기가 8회째다.

* '17년 상반기 점검실적 : 불법주차 등 202건 적발, 3,400만원 과태료 부과

-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8개소 대상으로 실시된다.

-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을 단속한다.

- 아울러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 출입구 근처 및 평평한 바닥면 설치, 규격(3.3×5m) 및 주차면수(전체의 2~4%) 확보 등

□ 보건복지부는 '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하여 올해 12월까지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12월까지의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안내도 실시한다.

* 종전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올해 12월까지 사용 가능, '18.1.1.부터 종전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단속을 통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가능)	종전	현행(변경)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간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홍보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붙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개요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Q & A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적발 사례
 4.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 개요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자료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표

붙임 1

‘17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단속) 개요’

☐ (점검 기관)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민간단체*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전국 198개소)

☐ (점검 기간) ‘17. 11. 13. ~ 12. 15. (1개월)

☐ (대상 시설)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3,708개소

-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읍·면·동사무소, 장애인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자연공원 및 체육시설 등

☐ (점검 항목) 12개 항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위치, 유효 폭, 높이차 유무, 적정 주차면수 등 설치기준 적합 여부(7개 항목)
- 불법주차, 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5개 항목)

* [붙임 6] 참조

※ 2017년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 대상시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219개소
- 불법주차 등 적발 : 총 238건(불법주차 216건, 표지위·변조 7건, 주차방해행위 13건, 표지불법대여 2건)
- 과태료 부과 : 202건(현장 계도 제외) 34,340천원

붙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Q & A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2.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불가” 표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가요?

-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

3. 장애인이면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장애인 중에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되는 장애인만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장애등급판정기준, 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구분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장 애	지 체 장 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	○	○	
		상지 관절					
		하지 관절	○	○	○	○	○
		상지 기능					
		하지 기능	○	○	○	○	○
		척추 장애		○	○	○	○
		변형 장애				○	
	뇌병변장애		○	○	○	○	
	시각장애		○	○	○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			
	호흡기 장애		○	○			
	간 장애		○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간질 장애						
정신적 장 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			
	정신 장애		○				

4.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50만원
- ▶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 해당
- ▶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 등 편의법」 제27조의 “불법주차”(10만원)와 함께, 「장애인
복지법」 제90조에 따라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200만원)에
해당하며, 위·변조의 경우엔 형사고발 조치 가능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누구나 가능합니다.

- ▶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이용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신고 가능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국민 누구나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서비스는 민원정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일상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비전을 확인을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만을 위한 주차구역입니다.

“주차가능” 표시없이 주차하거나,
“주차가능” 표시는 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거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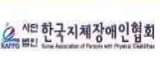
보행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워주세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방법



- ①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어플을 설치합니다.
- ②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실행합니다.
- ③ 민원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최초 1회 인증)
- ④ 불법 주차차 신고를 누릅니다.
- ⑤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를 클릭해 촬영합니다.
- ⑥ 내용입력을 클릭, 상세유형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선택 상세내용을 입력합니다. (신고위치 수정가능)
- ⑦ 민원등록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나의 민원정보에서 민원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태료 50만원 부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붙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적발 사례



비장애인 차량 불법주차 단속



‘주차방해 행위’



‘주차가능’표지 부정사용(차번호는 ‘9×××’이나 주차표지는 ‘6×××’)

붙임 4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 교체 개요

□ 보건복지부(장애인자동차표지)

○ 주차가능 표지의 명칭, 색상·모양을 변경

- (명칭) '장애인자동차표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모양)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 기존 표지와 구분 용이
- (색상)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 구분, 단속 시 식별 용이

○ 교체기간('17.1~12월) 종료 후 '18.1.1.부터 종전표지 사용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 단속 및 과태료(10만원) 부과

	종 전	현행(변경)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가능)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 4~12월까지 종전 사각형의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전면 교체

- '18.1.1.부터 종전 사각형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시 과태료(10만원) 부과

종전(사각형)	현행(휠체어형상화한 원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본인 운전용



○ 보호자 운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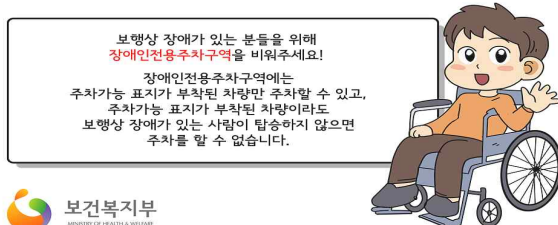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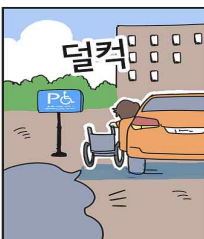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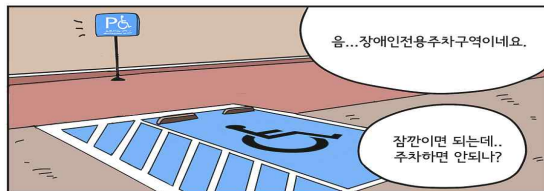
붙임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자료

○ 카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용안내 캠페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사용안내 캠페인 ①

©KAP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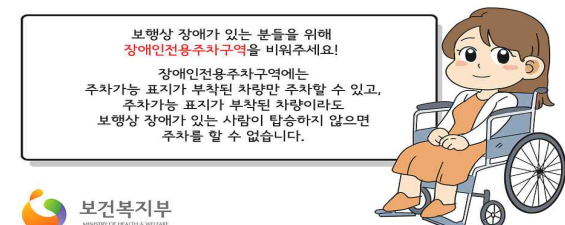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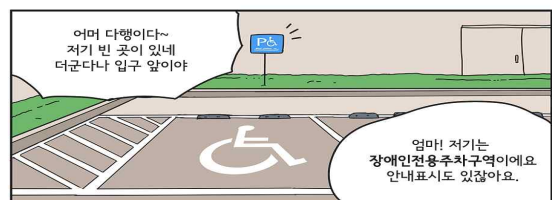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사단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법인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지원센터
ATAC Amenity Technical Assistant Center For The Disabled, Etc.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사용안내 캠페인 ②

©KAPPD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사단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법인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지원센터
ATAC Amenity Technical Assistant Center For The Disabled, Etc.

○ 리플렛(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가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지금 발급받으세요

아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체 장애	상지 절단	○	○	○	○		
	하지 절단	○	○	○	○		
	상지 관절	○	○	○	○	○	
	하지 관절	○	○	○	○	○	
	상지 기능	○	○	○	○	○	
	하지 기능	○	○	○	○	○	
신체적 장애	척추 장애	○	○	○	○	○	
	뇌병변 장애	○	○	○	○	○	
	시각 장애	○	○	○	○	○	
	청각 장애	○	○	○	○	○	
	평행	○	○	○	○	○	
	언어 장애	○	○	○	○	○	
정신적 장애	신장 장애	○	○	○	○	○	
	심장 장애	○	○	○	○	○	
	호흡기 장애	○	○	○	○	○	
	간 장애	○	○	○	○	○	
	안전 장애	○	○	○	○	○	
	장루·요루 장애	○	○	○	○	○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	○	○	○	
	지배성 장애	○	○	○	○	○	
	정신 장애	○	○	○	○	○	

* 2010. 1. 1부터 하지관절 6급 및 척추장애 6급은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발급 대상임

Q&A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주인등록주소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
신고해주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국민 누구나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1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어플 설치
- 2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앱 실행
- 3 민원인 정보 입력(최초 1회 인증)
- 4 불법 주차차 신고 클릭
- 5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클릭 후 촬영
- 6 내용인력을 클릭, 상세유형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선택한 후
상세내용 입력(신고위치 수정가능)
- 7 민원등록을 눌러 신고 완료
(나의 민원정보에서 민원처리 결과 확인)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을 위해 비워주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아래 표지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합니다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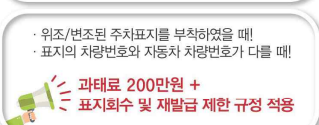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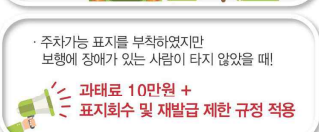
약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노인이나 임신부가 주차할 수는 없나요?

안 됩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이므로
노인이나 임신부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A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구역인가요?

아파트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주차방해에 해당하는 경우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과태료 50만원]

Q&A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 평행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되나요?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붙임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표

장애인전용주차면 일반 점검 사항

연 번	점검 항목	①적정	②부적정
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여부		
2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에 단차 등 장애물 또는 유해폭 확보 여부		
3	장애인주차구역의 규모 적정 여부(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평행 주차구역인 경우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		
4	주차공간 바닥면이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 유무		
5	주차공간 바닥표면이 미끄럽거나 걸려넘어질 염려가 없는지 여부		
6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성 여부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의 식별 용이성)		
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면수 확보 여부(소관 지자체에서 정한 장애인주차 구역 면수 정보 사전 확보)		
	* a : 조례상 확보해야 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수, b : 현재 면수	a :	b :

불법 주차 또는 주차 표지 불법 사용 점검

연번	점검 사항		위반건수	
			복지부 발행표지	보훈처 발행표지
8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행위(주차표지를 부착했다라도 등록된 번호인지 여부 확인, 주차 표지를 받은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등)			
9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여부	9-1 보행장애인 미탑승		
		9-2. 주차불가표지 차량		
10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불법 대여 등 여부(주차표지를 부착했으나 소유자가 장애인과 관련 없는 차량이 확인된 경우)			
11	비장애인차량(주차표지 없는 차량)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방해하는 경우			
계				